

보도시점 2023. 12. 19.(화) 석간 배포 2023. 12. 18.(월) 15:00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24.1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 '23.9월 대책 후속조치 이행,  
공동조사 진행상황 등 현안 논의

'23.12.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서면회의 대체)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조심협은 지난 '23.2.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23.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24.1.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 오게 된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권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이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23.9.25일, 거래소) 등 후속대책 발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입법예고(’23.12.14일, 금융위)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대응해 오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난 ’22.12월,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9월 대책에서도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써,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중요한 조사수단이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되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적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심협에서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대규모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대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지능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인력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와 '23.9월 발표한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인력도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향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권위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지난 9월 대책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역량을 집중·처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 02-2100-2608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 화 : 1332
-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별첨 1]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주요 내용**
- [별첨 2]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주요 현황**
- [별첨 3] '23년 상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 [별첨 4]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600)
		담당자	사무관	최민혁 (02-2100-2606)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2100-2601)
		담당자	사무관	김관범 (02-2100-2596)
<공동>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조윤수 (02-2100-2682)
<공동>	금융감독원 조사1국	책임자	국 장	이승우 (02-3145-5550)
		담당자	팀 장	조성우 (02-3145-5582)
<공동>	한국거래소 심리부	책임자	부 장	이승한 (02-3774-9140)
		담당자	팀 장	이종상 (02-3774-9142)
<공동>	금융투자협회	책임자	본부장	나석진 (02-2003-9011)
		담당자	팀 장	정원경 (02-2003-9140)

## 1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 예정

- \* ① [과징금 도입]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곤란 시 최대 40억)  
 ② [부당이득 법제화]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총비용)을 법률에 명시  
 ③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 자진신고 또는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시 제재(형벌·과징금) 감면

## 2 주요 내용

### ①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 (부과절차)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

- 다만, 검찰 통보 후 <sup>i)</sup>검찰과 협의 또는 <sup>ii)</sup>1년이 경과한 경우 검찰의 수사·처분결과 통보 前이라도 과징금 부과 가능

· 단, 1년 경과후에도 합리적 사유에 따라 검찰 요청시 제외\*

\*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가 수사·처분결과와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 요청시

○ (기준)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①기준금액→②부과비율 반영→③과징금 감면)에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반영

① (기준금액)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에 따른 부당이득액

② (부과비율) 중요도, 감안사유를 종합 감안하여 부당이득액 기준 2배 범위 내 부과비율 결정

\* 부당이득액 산정 곤란시, 20억원을 상한으로 하여 해당 거래금액의 5%를 부당이득액으로 간주 → 2배 부과시 최대 40억원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

위반행위의 중요도 <sup>1)</sup> 감안사유 <sup>2)</sup>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b>100분의 200</b> <sup>최대</sup>	100분의 150	100분의 125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b>100분의 50</b> <sup>최소</sup>

\* 1) 부당이득액 규모, 주가변동률, 행위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 고려  
 2) 허위자료 제출, 임원·주요주주의 위반(상향), 과실에 의한 경우(하향) 등

③ (과징금 감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등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 가능(기존 공매도 과징금 감면과 동일)

②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부당이득액을 ①실현이익, ②미실현이익, ③회피손실로 산정하고, 각각은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 (실현이익) 매수→매도 거래를 통해 실제로 실현된 이익  
 (미실현이익) 거래가 있었다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회피손실) 거래를 통해 회피·방어한 손실

\*\* (총비용)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

③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형벌 감면은 법원의 양형사항인만큼, 자본법 하위규정에서는 과징금 감면만 규율

○ (대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①자기범죄를 자수·자진신고 또는 ②타인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 ① 수사기관에 자수 또는 증선위에 자진신고한 경우  
 ② 수사·재판시 해당 불공정거래 관련 타인범죄를 증언하여 범죄규명 등에 기여

○ (수준) 증거제공, 성신험조 등 여부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모두 해당시) 또는 50%(하나만 해당시)까지 감면 가능

\* ① 자진신고등 당시 수사기관·증선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  
 ②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절차 종료시까지 성신험조  
 ③ (2인 이상 불공정거래행위시) 새로운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 (절차) 신청인이 행위내용, 증거 등을 포함하여 감면 신청 → 과징금 감면여부를 포함하여 과징금 부과결정(증선위 의결)

## 1. 금융위·금감원

-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방안 발표('23.5.30, 금감원)
    -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현 70명 → 95명)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 신설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9월 대책 발표 이후 5회('23.10.19, 11.2, 11.16, 11.30, 12.14)]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실무 담당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격주 개최하여 기관간 심리·조사사항 공유 및 기타 불공정거래 이슈 논의
- \* (주요 논의사항) ①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 공유  
 ②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③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 2. 거래소

-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발표('23.9.25)
  - 중·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 마련,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 다양화, 시장정보제도 개선 등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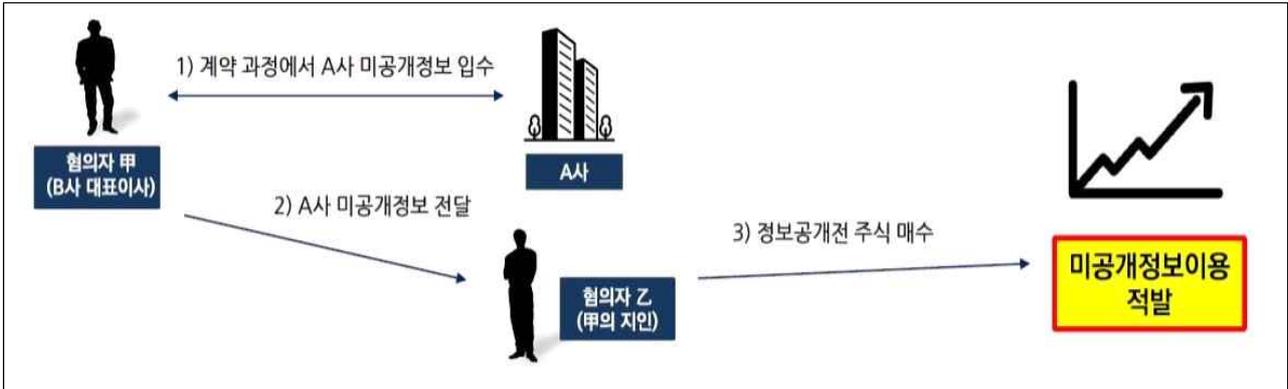
## 3.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23.12.19)
  - 상장사 공시 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당국 신고 의무화
  -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관련 정보에 대한 제3자 유출 등 금지 조항 신설
- K-OTC 시장감시 강화('24.1~2월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및 '24.上 시행)
  - K-OTC시장 내 이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정보제도 마련
  - K-OTC시장 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할 경우 금융위원회 통보 체계를 구축 등

**< 후속조치 계획 및 추진 현황 >**

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	추진현황
<b>1.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b>				
① 기관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	즉시 시행+규정 개정	즉시	금융위	- <b>완료</b> (실무협의체 등)
② 기관간 정보 공유 강화	시스템 개선+규정 개정	'24.2분기	금융위 등	-조사정보 공유시스템 개편 추진 중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 ('24.2분기)
<b>2-1. 시장감시 프로세스 개선</b>				
①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자진신고자 과징금 등 감면 - 상장사 등 신고 활성화	세부방안 마련 후속 규정 마련 금투협상장사 규정 개정	'23.4분기 '23.4분기 '23.4분기	금융위 금융위 금투협 등	- <b>완료</b> ('23.12.14 입법예고) - <b>완료</b> ('23.9.25 입법예고) - <b>완료</b> ('23.12.19 표준내부 통제기준 개정)
②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 개편	세부방안 발표	'23.9월	거래소	- <b>완료</b> ('23.9.25 후속대책)
③ 조기적발 체계 강화 - 주요 SNS 등 사이버 감시 강화  - 오프라인 채널 모니터링 - K-OTC 시장감시 강화	전산 개편  기능 신설 세부방안 발표	'23.4분기  기완료 '23.10월	거래소  금감원 금투협	- <b>완료</b> ('23.11 사이버감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전산 개발 계약 완료 등) - <b>완료</b> 관련 규정(K-OTC시장 운영 규정) 개정 및 세부방안 발표('24.1~2)
<b>2-2. 조사프로세스 개선</b>				
① 복합 위법행위 대응 강화	규정 개정	'24.2분기	금융위 등	-복합 위법행위에 대한 유관부서 종합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강화 -규정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추진('24.2분기)
② 거래소·금감원·금융위 협업 - 거래소 적발·심리 통합  - 금융위·금감원 협업체계 개편 - 거래소와 정보공유 확대	거래소 규정 개정  - 규정 개정	'23.4분기  즉시 '24.2분기	거래소  금융위 등 금융위 등	-거래소 정기인사 발령시 시행 예정('24.1~2) - <b>완료</b> (실무협의체 공동조사 활성화 추진 등) - <b>완료</b> (매분기 사건협의체 운영 등)
③ 긴급·중대사건 대응체계 강화	-	즉시	금융위 등	- <b>완료</b> (실무협의체 운영 영용제지 대응 등)
<b>3.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b>				
① 심리·조사 조직 개편 - 금융위 조직 개편 - 금감원 조직 개편 - 거래소 조직 개편	관계부처 협의 기완료 거래소 규정 개정	'23.4분기 - '23.4분기	금융위 - 거래소	- <b>완료</b> 행안부 협의 중 -거래소 정기인사 발령시 시행 예정('24.1~2)
② 성과평가 체계 개편	성과지표 변경 등	'24년~	금융위	-관계기관 지속 협의('24~)
③ 기관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	-	즉시	금융위 등	- <b>완료</b> (실무협의체 운영 24상반기 중 관계기관 합동 교육 추진 등)
<b>4.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b>				
① 전력자 위법행위 방지 - 자본시장 거래제한 등	자본시장법 발의	기발의	금융위	-자본시장법 기발의(양창현 의원안, '23.5월) -관계기관 협의 지속
②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세부방안 검토	'23.4분기~	금융위	-자본시장법 기발의(박재호 의원안, '23.3월) -관계기관 협의 지속
③ 조사 보안 강화	금투협 규정 개정	'23.4분기	금투협	- <b>완료</b> ('23.12.19 표준내부 통제기준 개정)

**사례 1** 상장회사 계약 체결 상대방(준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 甲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 A사의 미공개 정보를 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

① B의 대표이사 甲은 B사의 A사 유상증자 참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A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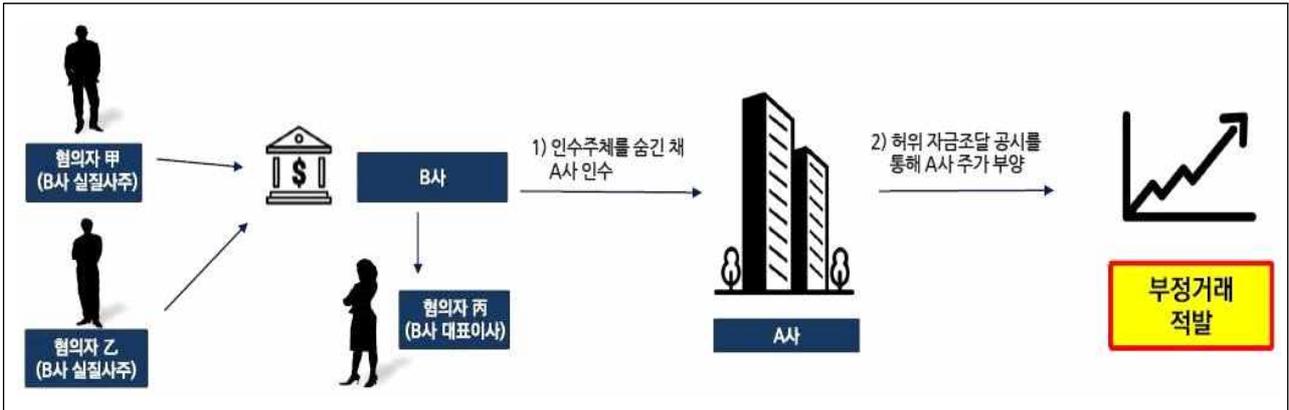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乙(1차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

② 乙은 甲으로부터 동 정보를 전달받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사 주식을 매수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 (투자자 유의사항) 1)상장회사의 계약 체결 상대방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경우 사실상 내부자로 간주되며(준내부자), 2)본인이 주식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2 허위의 자금조달 공시 등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 甲, 乙, 丙은 허위의 자금조달 공시 등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하여 A사의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중인 A사 주식 처분

① 甲, 乙은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자인 본인들이 인수주체라는 점을 은폐하기 위해 B사 명의로 A사 인수

- 甲, 乙은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투자자문업을 B사의 영위업종으로 공시하는 한편, 자산운용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丙을 B사 대표이사로 내세워 A사 주식 인수자금 출처가 사채자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회사가 정상적인 투자 자금으로 A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

② 甲, 乙, 丙은 A사 인수 후 A사 경영진에게 신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금조달 능력과 참여 의사가 없는 비상장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의 자금조달 사실 공시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 (투자자 유의사항) 최대주주 변경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BW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발행 대상자의 실체 및 투자자금 실제 납입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4

#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권위) → 수사·기소(검찰) → 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 1. 시장감시 현황 (거래소)

□ '23.10월 대비 '23.11월에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 시장경보 : 투자경고 및 투자주의(투자경고지정예고 및 매매관여과다 종목) 증가  
 예방조치 : 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 단주 매매 등) 계좌 증가

구 분		'23.8월	'23.9월	'23.10월	'23.11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257건	190건	154건	182건
	투자경고	28건	21건	6건	18건
	투자위험	1건	1건	0건	2건
	소 계	286건	212건	160건	202건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 등)		500건	352건	398건	516건

## 2. 심리 현황 (거래소)

□ '23.11월말 기준,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 특히,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등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23.8월	'23.9월	'23.10월	'23.11월
신규착수	10건	12건	14건	6건
종결	17건	6건	15건	10건
진행중	9건	15건	14건	10건

## 3. 조사·조치 현황 (금융위, 금감원)

□ 금융위·금감원은 19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3.8월	'23.9월	'23.10월	'23.11월
조사	신규 착수	22건	15건	6건	33건
	종결	14건	11건	10건	10건
	진행중	169건	173건	169건	192건
조치	고발	-	1명	5명, 4개사	-
	통보	37명	7명	11명, 2개사	12명, 2개사
	과징금	3개사	1명, 7개사	2명, 8개사	7개사
	과태료·주의·경고	-	1명, 9개사	-	1개사
	합계	37명, 3개사	10명, 16개사	18명, 14개사	12명, 10개사